



가축전염병 예방법

[시행 2019.7.1][법률 제16115호, 2018.12.31, 일부개정]

○ 개정이유

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,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.

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, ‘가축방역위생관리업’ 도입,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,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,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,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,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,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,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, 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

가. ‘가축방역위생관리업’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,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를 규정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소독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(제2조제8호,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).

-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축산관계자 주소,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제3조의3제3항 신설).

다.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여부를 추가함(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).

-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라.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를 추가함(제17조제1항제4호).

-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마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를 하고, 기준치 초과 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,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24조의2 신설).

바.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,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함(제48조제1항제3호).

사. 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(제55조의2제1호 신설, 현행 제56조제1호 삭제).

※ 자세한 사항(개정문 등)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